

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(H5형)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
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이하 중수본)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(AI)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.

* 반경 10km 이내 가금농장 없음

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, 예방적 살처분,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,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(Standstill)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.

*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~3일 소요 예상

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4일(월)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(화)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, “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(사료공장, 도축장 등)·축산차량”에 대해 발령된다.

*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 농장·축산시설·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

*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

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(12개반, 24명)을 구성하여 농장·시설·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.

*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

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·사람 대상 소독,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, 축사 내·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.

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·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.

붙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

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☎ 1588-9060 / 4060

담당 부서	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	책임자	과 장	김용상 (044-201-2551)
		담당자	사무관	김석재 (044-201-2555)
	환경부 야생조류질병관리팀	책임자	과 장	곽충신 (044-201-7491)
		담당자	사무관	임호균 (044-201-7502)


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PAI) 예방 「농장 4단계 소독」 요령

1단계 농장 출입시 소독 철저

농장진입로 폭 2m이상
생석회 충분히 도포

출입구 고정식+고압분무기
2단계소독



- 1주일 간격 반복 도포
- 고장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 추가 소독
- 비는 내린 후 즉시 재도포

2단계 농장 내부 관리 철저

농장 내부(축사 밖)
매일 청소·소독

부출입구·뒷문 폐쇄



- 농장내 야생조수류 유인 요소(시료·폐사·축왕겨) 매일 청소소독
- 전실마설치 축사 뒷문(쪽문) 폐쇄
- 방역·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 폐쇄
- ※ 소독약은 용법용량 권장 희석배수 준수

3단계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·손 소독

축사 출입시 전용장화 갈아신기
손소독(위생장갑 착용시 포함) 실시



- ※ 신발소독조 소독약은 2~3일 간격 교체
- 전실에 전용장화·손소독제 비치·전실 매일 소독
- 신발(장화)에 붙은 유기물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
- 장화 갈아신기용 구조물 또는 발판 설치

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

축사 출입구, 내부 통로, 환기구 등 집중 소독
정기적인 설치류 제거 및 안개분무 소독



- 사람·가족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사 금지
- 가족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

농장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
가축질병 피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.

